2020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계획

引 개 品

- (관련근거) 도로명주소법 제13조(유지관리의 위탁 등), 제23조(지도·감독 등)
 - 시장 등은 **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 시설 등을 일제조사**하여 조치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장을 지도·감독 할 수 있음
- (조사목적) 도로명주소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시설물 점검
 - 안내시설의 **훼손, 망실 및 표기 오류** 등을 파악 및 교체하여 국민에게 도로명주소 정보의 올바른 제공
 - 도로명주소의 연속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미비점 발굴 등
- (조사방법) 일제조사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 능률성 제고
 - 현장조사용 모바일 국가주소정보시스템(스마트 KAIS) 활용 전수조사
 - 안내시설의 훼손, 망실 및 표기 오류 등을 전산관리하여 점검 효율 제고

② '20년 일제조사 및 정비 계획

- (시행주체) 시·군·구 지방자치단체 *스마트 KAIS 활용
 - * 안내시설물 현장조사용 모바일 국가주소정보시스템(지자체 업무 담당자 사용)
- (확인점검) 해당 지자체 시·도
 - ※ 행안부는 시·군·구 추진사항(조사·정비) 및 시·도 추진사항(점검) 확인·지도
- (조사대상) '19년 말까지 설치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

구분	계	도로명판	건물번호판	기초번호판	지역안내판
조사대상(개)	7,286,147	883,061	6,252,031	147,655	3,400

- ※ 2019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점검 결과
- (정비계획) 지자체 담당자 교육 후 '스마트 KAIS'를 활용하여 전수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한 안내시설은 당해 연도 정비 및 조치 결과 등록
 - (교육) 시설물별 조사 기준과 '스마트 KAIS' 활용 방법 등 지자체 담당자 교육 후 시군구별 조사자 교육 실시
 - * 외부 인력 운영시 보안서약서, 인증서 비밀번호 별도 관리 등 보안 조치

- (조사) '스마트 KAIS'를 활용하여 시설물별 상태 전수조사, 주변 환경이나 시설물 상태 변경이 없는 경우 사진 촬영 생략 가능
- (정비) 조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안내시설은 당해 연도 정비 및 KAIS에 조치 결과 등록 완료
 - *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조치, 건물번호판 훼손은 1개월 이내 조치 (특히 소유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안내문 발송만으로 종결하지 않도록 유의)

③ 향후 계획

- '20년 안내시설 조사·정비 및 스마트 KAIS 활용 매뉴얼 배포: '20. 2월
-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: '20. 3월~
 - (내용) '20년 일제조사 실시 개요 및 스마트 KAIS 설명
 - (방법)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게시판 내 교육자료 게시
 - * 당초 3월 중 권역별 집합교육 실시 계획이었으나, '코로나19'로 인한 교육일정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, 향후 필요 시 집합교육 추진계획
- '20년 일제조사·정비 지자체별 세부계획 수립 및 실시 : '20. 3~9월
 - * 시군구별 조사자 대상 스마트 KAIS 등 사전 교육 및 보안조치 완료(\sim '20.3.)
- '20년 일제조사·정비 **결과제출** : **'20. 9월**
 - * 일제조사 점검 현황은 시스템(KAIS) 취합 후 통계자료 분기별 지자체 통보 계획
- 안내시설 조사 및 정비관련 실태 현장 점검 : '20. 5~11월(1~2회)
 - ※ (시도) 시·군·구 현장 점검 (행안부) 지자체 추진사항(조사·정비·점검) 확인
- '20년 일제조사·정비 확인 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: '20. 10~12월

참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 정비 연간 스케줄

